

공 시 송 달 공 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 재산(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우편물 반송)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 8.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제 목 : 2014년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14.08.25. ~ 2014.09.08.(15일간)
- 대 상 자 : 따로 붙임 참조
- 문의 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재무과(02-2670-3188)
- 기 타 :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납부의무자(점유자)께서는 2014년 9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재무과)에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유재산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사전통지서 송달내역 1부